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지역균형인재의 범위 확대 〉

■ 한병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078호)

2025. 2.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한병도 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4. 11. 29.
3. 회부연월일 : 2024. 12.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균형인재를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정의하면서, 지역균형인재의 공무원 임용 기회 확대, 공공기관 등 채용 확대,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우대 채용 등 지역균형인재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내용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균형인재를 육성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에 있는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재학 중인 사람은 지역균형인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지역발전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 등의 지역균형인재 채용 확대 등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 및 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법률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역균형인재의 범위에 지방에 있는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재학 중인 사람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인재들의 지역 재유입 및 정주 유도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한편, 공공기관 등의 지역균형인재 채용 확대 등과 관련한 지원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3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지역균형인재를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재학 중인 사람도 포함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역균형인재 채용 확대와 관련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지역균형인재”(이하 “지역인재”라 한다)란 <u>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u> 을 말한다. <u><신설></u>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 <u>다음 각</u> <u>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 -----. <u>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와 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모두 졸업하고, 수도권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및 각종</u>

현행	개정안
<u><신설></u> 3. (생략) 제13조(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① ~ ③ (생략)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기관 및 기업에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 3. (생략)	<u>학교는 제외한다)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사람</u> <u>나.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u> 3. (현행과 같음) 제13조(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행정적·재정적</u> <u>지원 등 대통령령으로</u>----- -----. 1. ~ 3. (현행과 같음)

지역균형인재란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로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은 지역균형인재에 대해 지역인재의 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교수 또는 연구원 채용시 지역인재 우대 채용, 공공기관 등에서의 일정비율 이상 지역인재 채용 노력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¹⁾ 참고로 2024년 8월 14일부터 비수도권 소

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지역인재의 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① 국가는 신규 임용하는 국가공무원 중 지역인재가 일정비율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시행 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임용하는 지방공무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지역인재

재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균형인재의 범위에서 지방의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도권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제외하여, 이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개정안은 이러한 지역인재의 범위를 확대하여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그러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은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바²⁾, 개정안과 같이 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자를 지역인재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공공기관 취업정원은 한정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수도권 대학 졸업자들이 이를 잠식할 가능성이 있음.

유사법안으로는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³⁾이 있음. 해당 법안과 개정안은 지역균형인재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나, 개정안과 달리 해당 법안은 지역균형인재의 범위를 지방의 중·고등학교를 졸

가 일정비율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하 이 조에서 “기업”이라 한다)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대학 등의 지역인재 우대 채용)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교수 또는 연구원 등을 채용하는 경우 지역인재를 우대하여 채용할 수 있다.

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의안번호 제2201096호,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업한 후 수도권 대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사람으로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참고로 혁신도시법에서도 본 개정안에서 제기된 역차별 문제가 제기된바 있으며, 21대 국회에서 혁신도시법상 지역인재의 범위를 확대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음.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또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과 유사하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의 무채용을 규정하고 있음. 다만, 공공기관의 범위 및 지역인재의 범위 등에서 두 법률은 차이가 있음.

구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공기관의 범위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이전공공기관 ⁵⁾ 에 한정
지역인재의 범위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의무채용 비율	35%	30%

교육부는 본 법률은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 균형 있는

4) 의안번호 제2121917호, 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이전공공기관”이라 함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제2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개별이전하는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므로, 동 법률의 지역인재의 범위를 수도권 대학 졸업(예정)자로 전면 확대하는 것은 입법취지와 상충되고, 지방대학의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비수도권 초중고교를 모두 졸업하고 수도권 대학 졸업(예정)자까지 지역인재의 범위에 포함하여 지원할 경우 한정된 자원(비수도권 공공기관 의무채용 정원 등)을 잠식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역균형인재의 범위를 수도권대학 출신까지 확대할 수 있는 제2조 개정안은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대학육성이라는 현행법 취지에 어긋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개정안 제2조가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약화하고 지역 우수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가속할 우려가 있어 본 법률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현행법령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경북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북대학교는 지방 우수인재의 수도권 유출 및 지방대학의 경쟁력 약화를 가속할 우려가 있어 본 법률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현행법령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88